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10. .

발 의 자 : 이길호, 성복임, 장경민,
이건행, 홍경호, 신금자,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1. 제안이유

-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군포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나. 조례상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다.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군포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인명구조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2. 야간방범 및 청소년선도 활동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활동
4. 호수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공원 산악안전 및 예방 활동
6. 그 밖에 군포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